

검토보고서

2024. 4. 16.(화)

검토안건	발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4. 4. 2.
- 회부일 : 2024. 4. 3. (의안번호 : 24-51)

2. 제안이유

-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금액 (안 제3조~ 제4조)
- 지원신청 및 절차 (안 제5조~ 제6조)
- 환수조치(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4. 2. 29.~ 3. 20.(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였고, 지원금액은 1명당 15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신청 및 절차를
 - 안 제7조에서는 환수를 규정하는 등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조례안의 제정 배경

-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비장애여성 47.8%), 종합 병원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25.7%(비장애여성 15.5%) : 국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 또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2020년 기준 가처분소득 평균은 연간 2,437만 원으로 비장애인의 가처분소득 평균인 연간 3,490만 원의 약 7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시장에서 직접 획득한 소득으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0년 약 15%에 불과함.
- 이에 우리구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 안의 입법 취지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생활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 중복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고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일반적인 출산지원금과는 별도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도모 차원에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아울러 지원대상자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제도 운용에 있어 장애인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제도 홍보 등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적기에 누락 없이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장애인 사회보장과	신희선 (8880)	송희정 (887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안 제4조제1항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사회보장과 강나은
연 락 처	02-3153-8873

참고 자료

1.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 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 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마포구 거주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출산지원금

구분	마포구민 대상 출산 지원금 (국비) 첫만남 이용권	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국비 + 시비)	조례 제정 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구비)
지원금액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 여성장애인 120만원 (국비50%+시비50%) · 남성장래인 120만원 (전액 시비)	남성·여성, 장애정도 구분없이 150만원 (구비100%)